제327회 정례회
행정자치위원회

2024년도 3분기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4. 11.

감사위원회

# 1. 개 요

## ☐ 관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"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"

## ☐ 보고 대상

○ 기 간 : 2024. 7. 1. ~ 9. 30.(2024년 3분기)

○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등

## ☐ 접수결과

○ 2024년 3분기 총 59건 접수

〔표 1〕 2024년 3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| 접 수 | 창 구 | 합 계 | 7월 | 8월 | 9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익제보 지원센터 | 공직자비리신고 | 27 | 17 | 6 | 4 |
| | 공 익 신 고 | 25 | 10 | 9 | 6 |
| | 퇴직공무원특혜 | 1 | - | - | 1 |
| | 부 정 청 탁 | 6 | - | 6 | - |
| 국민권익위원회 | 국민신문고 | - | - | - | - |
| 합 계 | | 59 | 27 | 21 | 11 |

# 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## ☐ 제보 경로 분석

〔표 2〕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| 경로 | 합 계 | 공익제보지원센터 | | 국민권익위원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온 라 인<br>PC/모바일 | 오프라인<br>우편/방문/팩스 | 국민신문고<br>시스템 연계/이첩 |
| 접수건수 | 59<br>(100%) | 58<br>(98%) | 1<br>(2%) | - |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## ☐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○ 본청 소관 사무 제보 20건(33.9%), 본부/사업소 소관 7건(11.9%)

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5건, 부패신고 9건, 기타민원 6건
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부패신고 4건, 기타민원 2건

○ 그 외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7건(11.9%), 타기관 5건(8.5%)

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부패신고 4건, 기타민원 2건
- 타기관 5건은 서울시청 외 소관민원

○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20건(33.9%)

-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신고 12건
- 자치구 직원 관련 부패 신고 4건, 기타민원 4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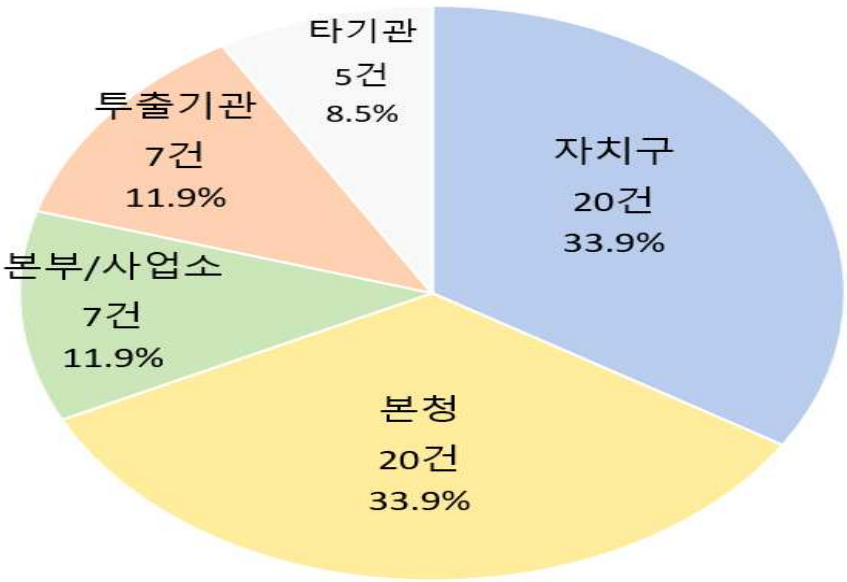

# 3. 공익제보 분류

## ☐ 제보내용의 분류

### ○ 접수된 59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45건

〔표 3〕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(단위 : 건)

| 총계 | 공익제보 해당 45건(76.3%) | | 기타 |
|---|---|---|---|
| | 부패신고 | 공익신고 | |
| 59 (100%) | 21 (35.6%) | 24 (40.7%) | 14 (23.7%) |

* 기타: 공익제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소관 기관 감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민원(업무처리 불만, 항의) 등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 해당 신고 범위

| 구 분 | 개 요 | 신고 대상 행위 |
|---|---|---|
| 부패 신고 |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"부패행위"신고 | 1. **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** 그 지위 또는 권한을 **남용**하거나 법령을 **위반**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**이익을 도모**하는 행위<br>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**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**를 가하는 행위<br>3. **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**하는 행위<br>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 |
| 공익 신고 |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"공익침해행위"신고 | 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**493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** |
|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|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| 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|

# 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## □ 공익제보 세부내역(총 45건)

### ○ 부패신고 : 21건

〔표 4〕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(단위 : 건)

| 구분 | 소관기관 | 건수 | 내 용 |
|---|---|---|---|
| 업 무 부 적 정 | 본 청 | 2 | 업무 추진 과정 중 부당행위 |
| | 본부·사업소 | 2 | |
| | 자 치 구 | 4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- | |
| | 타 기 관 | - | |
| | **소 계** | **8** | |
| 불 공 정 행 위 | 본 청 | - | 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|
| | 본부·사업소 | 2 | |
| | 자 치 구 | -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- | |
| | **소 계** | **2** | |
| 복 무 | 본 청 | 1 | 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품위유지 위반 등 |
| | 본부·사업소 | - | |
| | 자 치 구 | -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4 | |
| | **소 계** | **5** | |
| 금품·향응수수 | 본 청 | 6 | 금품 등의 수수, 요구 또는 약속 |
| | 본부·사업소 | - | |
| | 자 치 구 | -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- | |
| | **소 계** | **6** | |
| **총 계** | | **21** | |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 포함

## ○ 공익신고 : 24건

〔표 5〕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(단위 : 건)

| 구 분 | 소관기관 | 건수 | 내 용 |
|---|---|---|---|
| 의 료 법 | 본 청 | 2 |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|
| | 자 치 구 | 4 | |
| 금융소비자보호법 | 타 기 관 | 4 | 심의필 없는 대출광고 등 |
| 도 시 정 비 법 | 자 치 구 | 3 |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감독 요청 |
| 건강기능식품법 | 자 치 구 | 1 | 무허가 건강식품 판매 |
| 건 축 법 | 자 치 구 | 1 | 불법증축 |
| 공공주택특별법 | 투자출연기관 | 1 | 불법전대 |
| 공동주택관리법 | 투자출연기관 | 1 | 관리사무소 감독요청 |
| 기 부 금 품 법 | 본 청 | 1 |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|
| 산업안전보건법 | 자 치 구 | 1 |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 미흡 |
| 소 방 시 설 법 | 자 치 구 | 1 | 소방서 협의 없는 건물 용도변경 허가 |
| 아 동 복 지 법 | 본 청 | 1 | 민간위탁시설 운영 부적정 |
| 전기안전관리법 | 본 청 | 1 |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|
| 전력기술관리법 | 타 기 관 | 1 | 미등록 업체 전기시설 설계 |
| 청 원 경 찰 법 | 본부 / 사업소 | 1 | 청원경찰 품위손상 |
| 총 계 | | 24 | |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, 적용 법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*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# 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4. 9. 30.기준)

## ☐ 처리 내역(총 59건)

〔표 6〕 접수제보 처리 현황 (단위 : 건)

| 총계 | 처리완료(0) | | 내부종결(30) | | | | 진행중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처분 (조치) | 개선 등 | 해당없음 | 권한없음 (직접제보안내) | 중복 등 (증거불충분, 보완요구 등) | 취하 | |
| 59 | - | - | 5 | 4 | 15 | 6 | 29 |

※ 개선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## ☐ 처분(조치) 내역

〔표 7〕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 (단위 : 건)

| 연번 | 신고구분 | 신고 내용 | 처분기관 | 조치 내역 |
|---|---|---|---|---|
| - | - | - | - | - |